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278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131	이인영의원 등 10인	2025. 11. 11.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6. 3. 31)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2220606	송언석의원 등 11인	2026. 8. 14.	소위원회 직접회부(2026. 8. 31.)	
	2220672	김태년의원 등 11인	2026. 8. 20.	소위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소위원회 직접회부(2026. 8. 31.)	
				소위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나.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는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6. 9. 3.)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1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5년간</u> 효력을 가 진다.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u>15년간</u>----- -----.